

문서번호	환경과-14683
결재일자	2016.6.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

담당	에너지관리담당	환경과장	도시환경국장	
정낙문	안은섭	지역환	06/01 代최대규	
협조				

## 2016년도 상반기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추진계획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.

2016.06

도시환경국  
환경과

## 2016년도 상반기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추진계획

가스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수칙 및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운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.

### I 점검 개요

#### ■ 점검근거

- 2016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, 환경과-30996(2015.10.19)
- 2016 상반기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지침(예방과-13497, 16.05.30)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

#### ■ 점검기간 : 2016. 06. 15 ~ 06. 16(2일)

#### ■ 중점 점검사항

- 가스운반차량
  -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
  - 가스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
  - 운반과 관련 불법행위 단속

#### ■ 점검자 : 구청, 소방서,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

## II 점검 대상 시설 현황

### ● 가스운반차량

계	L P 가스		고 압 가 스	
	소계	판매	소계	판매
7	5	5	2	2

## III 세부 점검계획

### ■ 가스운반차량 안전관리

#### ● 중점확인사항

##### -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

- .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내 불법 주.정차 행위
- . 충전 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
- . 고압가스 운반기준(적재, 하역, 운행, 휴대품 등) 준수여부
- . 차량의 경계표시, 위험표시 등 적정여부
- . LP가스용기 하차 시 충격방지(완충판 이용)조치 이행여부
- . 용기전용 운반자동차 대표자 명의 확보 여부 등

##### - 가스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

- . 운전자, 배달원 특별교육 이수 여부
- . 판매사업자, 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

##### - 운반과 관련 불법행위 단속

- . 판매구역 위반 판매자, 지입차량 배달원의 독자적인 거래처 구축 등 무허가 판매행위

- .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차량에 적재된 LP가스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사례 등 차량 충전행위 위반
- . LP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위반 『액법 제36조』
- . 차량 불법구조변경 『자동차관리법제34조』

## IV 행정사항

- 가스운반차량운전자,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가스운반책임자에 안전 관리규정과 고압가스 운반기준 등을 준수토록 홍보

- 붙임 : 1. 업체별 가스운반차량 현황 1부.  
2. 가스운반차량 점검결과서 1부.  
3. LPG,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1부. 끝.

[붙임 1]

## 업체별 가스운반차량 현황

연번	업소명	차량번호	운전자	운반가스 명
1	유공가스	95두2994	김현식	LP가스
2	"	81러7119	최수길	LP가스
3	"	91구4373	김용인	LP가스
4	양심가스	서울82보9487	유정용	LP가스
5	린나이가스	83가8802	권덕성	LP가스
6	광진산소	80주7321	이남용	고압가스
7	"	80주7632	김용호	고압가스

[붙임 2]

## 가스운반차량 점검결과

( ○○구청 )

### 1. 점검실적 총괄

(단위 : 대)

구 분	수 량	점검 수량	점검결과		부적합 차량 조치						비 고	
			적합	부적합	계	고발	과태료	과징금	시정명령	현지시정		
계												
탱크 로리	LPG											
	고압가스											
용기 운반 차량	LPG											
	고압가스											

### - 법규위반 행위단속 내역

차 량 번호	운전자 성 명	차량 소속		위 반 내 용	행정조치	비 고 (조치결과)
		상호명	대표자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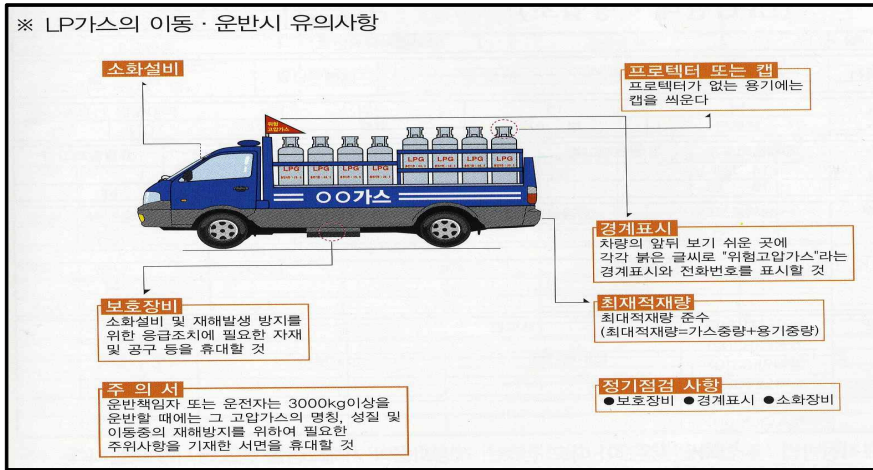
### 3. 기타 사항

- 점검결과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

- 점검결과 미흡한 점

## LPG ·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

□ 근거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「별표 30」



□ 주요점검 착안사항

○ 차량의 앞뒤에 경계표시가 되었는지 확인

- 붉은 글씨로 "위험고압가스" 또는 "독성가스"라는 경계표지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

○ 고시의 운반기준중 경계표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

- 경계표지는 차량의 앞뒤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"위험고압가스"라 표시하고 삼각기를 운전석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

- 삼각기는 적색바탕에 글자색은 황색, 경계표지는 적색글씨로 표시

- 고압가스운반 시 휴대하는 소화설비, 보호구 및 자재 등 보호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

- 탱크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(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)에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가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

- 용기 등 적재 및 하역기준 준수여부

· 염소와 아세틸렌·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

·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